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7. 30. 체결된 13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등

- 1)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2) B은 2016. 9.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가 2017. 8. 30. 이를 양도하였는바, 분당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주주인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세액을 고지(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1. 14. 당시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2차납세의무 지정일	2차납부 통지일 (발송일)	고지세액	체납액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7.05.02.	2017.05.31.	2017.12.13.	2017.12.14.	17,781,650	20,002,750
부가 가치세	2017년	2017.03.31.	2017.06.02.	2017.06.30.	2017.12.13.	2017.12.14.	22,144,940	34,468,130
법인세	2016년	2016.12.31.	2017.07.03.	2017.07.31.	2017.12.13.	2017.12.14.	17,786,930	27,605,170
부가 가치세	2017년	2017.06.30.	2017.09.07.	2017.10.15.	2017.12.13.	2017.12.14.	22,190,500	32,202,740
법인세	2017년	2017.06.30.	2017.10.10.	2017.10.31.	2021.06.07.	2021.06.08.	10,694,350	16,345,380
법인세	2017년	2017.06.30.	2017.12.01.	2017.12.31.	2021.06.07.	2021.06.08.	10,665,820	16,018,580
합 계							101,264,190	146,642,750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 1) B은 2020. 3. 22. D에게 그 소유인 부천시 E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35,000,000원은 2020. 9. 17.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위 계약금 15,000,000원은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2020. 7. 30. 잔금 135,000,000원은 D로 하여금 B의 자녀인 피고의 인주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분당세무서장이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피고는 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은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 12. 31.에서 2017. 6. 30.까지로, B이 2016. 9. 1.부터 2017. 8. 30.까지 과점주주인 기간 동안 성립한 것이므로, 모두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B은 위 13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B의 자녀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2020. 7. 30.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증여액 135,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아영